

고용노동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수신 관내 건설현장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건설사 대표 귀하  
(경유)

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 1.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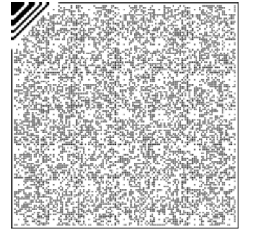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사용가능품목	비고
<b>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b>	<b>사용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b>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장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제2항 적용
9. 법 제36조에 따른 <b>위험성평가</b>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b>산업안전보건위원회</b> 또는 법 제75조의 <b>노사협의체</b> 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b>액상 형태의 이온음료</b> ,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근로감독관	<b>황영현</b>	팀장	대결 2026. 6. 17.	과장	전결
			<b>유재신</b>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감독과-2161 (2026. 6. 17.) 접수

우 2638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2 ( 무실동 1720-2 한국국토정보공사빌딩) 3층 산재예방감독과 / moel.go.kr/wonju

전화번호 033-769-0829 팩스번호 0503-8803-0391 / younghyun22@korea.kr / 비공개(5,6)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